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058
----------	-------

발의연월일 : 2026. 5. 26.

발 의 자 : 한민수·김영환·황정아
강준현·허영·김용만
김우영·이연희·이정문
박해철·김남희·채현일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특정 업체가 이른바 ‘탱크데이’라는 부적절한 마케팅 행사를 진행해 수많은 시민이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훼손하고 이를 희화화했다는 사회적 공분이 일어난 바 있음.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만을 규정하고 있어 희생자나 유족·관련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행위, 그리고 비방·왜곡·날조 등 다양한 형태의 2차 가해를 효과적으로 제재하는 데 명백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뿐만 아니라 희생자·유족·관련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모욕 또는 비방·왜곡·날조 행위까지 대상과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아울러 규정된 처벌 수위를 상향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본적 가치를 수호하고 헌법 전문에 수록되어야 할 5·18 정신의 훼손을 방지함과 동시에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온전히 회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중 “5·18민주화운동에”를 “5·18민주화운동 등에”로, “유포 금지”를 “유포 등 금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를 “5·18민주화운동 및 희생자, 유족, 관련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모욕 또는 비방·왜곡·날조하는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 3. (생략) ② (생략)</p>	<p>제8조(5·18민주화운동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 금지) ①</p> <p>-----</p> <p>-----5·18민주화운동 및 희생자, 유족, 관련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모욕 또는 비방·왜곡·날조하는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